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·보수·해체 (해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전기설비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.)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. 다만, 해체공사는 제1호의 규정 중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의 해체공사에 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전기공사) ① 「전기공사업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 (저수지,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)로 한다.	제2조(전기공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<u>유지·보수하는</u> 공사 및 그 부대공사	6. ----- <u>유지·보수·해체(해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전기설비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.)하는</u> ----- ----- <u>. 다만, 해체공사는 제1호의 규정 중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의 해체공사에 한한다.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	< 부 칙 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895